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족센터(간강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9.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9.

복지문화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
- 발의일자: 2023. 9. 1.(금)
- 회부일자: 2023. 9. 1.(금)
- 검토기간: 2023. 9. 4.(월) ~ 9. 8.(금)

### 2. 제안이유

-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규모 (면적, m <sup>2</sup> )	시설현황	비고
달서구 가족센터	대구 달서구 이외음악당로3길 60(성당동)	연면적: 1,105.37 부지면적: 668.8	지하1층: 공동육아나눔터, 문서고 1층: 사무실, 집단상담실 2층: 교육장, 상담실, 언어치료실 3층: 강당	종사자 36명

※ 연간운영보조금: 687,240천원(기금:시비:구비, 5:2.5:2.5)

※ 현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2021. 1. 1.~2023. 12. 31.)

#### 나. 위탁개요

##### ○ 위탁내용

-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운영
-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아이돌봄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 ○ 위탁기간: 5년(2024. 1. 1.~2028. 12. 31.)

#####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 4. 관련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10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3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달서구가족센터1)(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통합서비스와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서구가족 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달서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10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달서구 내 외국인 주민은 10,867명으로 대구시 31,689명의 34.3%를 차지하고, 한부모가족 2,307가구, 다문화가구 2,844가구<sup>2)</sup>(결혼이주자 2,557명, 자녀 2,202명)로 가족센터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으므로 전문성과 지역 네트워크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상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13길 60(성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달서구가족 센터는 연면적 1,105m<sup>2</sup>,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종사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원화되어 있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8년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 취약·위기 가족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상담 및 통·번역,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

1) 여성가족부는 2021년 10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가족사업 안내」 개정을 통해 2021년 10월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함.

2) 2021년 11월 1일 기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다문화가구 가구원 현황 참조

지원하여 2022년 7개 사업분류 18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4,630건에 214,265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음.

- 이에 따라 달서구가족센터 위탁근거는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가 있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계법령

##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 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 ②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업무실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수탁시설의 향후 운영계획

2. 대표자 및 상근근무자의 전문성

3. 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4. 제8조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액 및 계약위반시의 책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